

# 國際特許分類(IPC)의 歷史

(中)

黃 允 清

<特許廳 審査擔當官>

— 承 前 —

## ④ 分類의 細分化

### 1. 作業部會의 會合

分類의 細分化作業 곧 메인그룹 및 서브그룹의 作成作業은 이미 1954年 봄 作業部會의 第5회 會合부터 着手하고 있었다. 이 작업은 最初 機械擔當部門 및 化學擔當部門에 의하여 行해졌다. 1957年에 또다시 電氣擔當部門도 작업을 開始했다. 작업을 促進하기 위하여 作業部會를 段階的으로 擴大하는 일이 決定되었다. 이 결정을 받아 들어서 제14회 회합에서 機械擔當部門Ⅱ가, 제26회 회합에서 기계담당부문Ⅲ이, 제29회 회합에서 物理擔當部門Ⅰ이, 그리고 제31회 회합에서 물리담당부문Ⅱ가 작업을 개시했다. 化學擔當部門은 제30회 회합에서 그 작업을 完了했다.

제38회 회합에서 분류의 細分化作業은 모두 完了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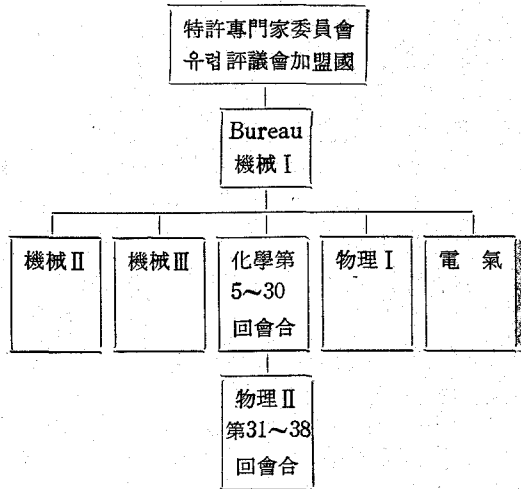
분류의 세분화작업에 12年間을 要한 것을 考慮하여 작업부회는 다음의 點에서 全展開를 檢討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했다:

- (A) 이미 오래된 몇가지 分野의 技術에의 對應
- (B) 分類體系의 不備의 除去
- (C) 相異한 技術分野面의 境界線 및 重複의 解明

이것들에 대한 補正은 1966年에 行해졌다. 特許의 國際分類에 관한 유럽條約下에서의 組織은 第1-1圖와 같이 되어 있다.

作業部會構成國: 西獨, 프랑스, 英國, 폴란드, 오스트리아, 벨지움, 캐나다,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 美國 및 蘇聯. IIB도 언제나 參加했다.

第1-1圖



### 2. IPC 第1版의 發効

특허의 국제분류에 관한 유럽條約에는 분류의 細部展開에 관한 規定이 있었다(第2條 第1項). 이 규정에 따라서 特許專門家委員會는 세분

개의 責任을 지고 또한 締結國에서 提出된 補正案에 대하여 意見을 提示했다. 그래서 작업부회의 事務는 條約附屬書(分類表)에 包含되는 比較的 粗雜한 分類體系마다 100~200의 文獻이 분류되는 單位로 細分化하는 일이었다.

이 數는 經濟的方法으로 檢索을 行하는데 適當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新分類體系는 manual 檢索用으로 쓰는 것을 主된 目的으로 考案된 것이었다.

전개過程에서 特許專門家委員會는 특허의 국제분류에 관한 유럽條約附屬書의 補正版에 同意하고 이 보정판은 1961年 12月 16日에 發効되었다. 작업부회의 要請에 의하여 유럽評議會事務局長은 1965년에 특허의 국제분류에 관한 유럽條約附屬書의 再補正版을 發行했다.

이 재보정판은 깊이 파고들어 세분화되어 있었다. 1966년의 全分類體系의 改正後에 작업부회는 特許專門家委員會에 分類體系의 最終版을 提出하고 承認을 求했다.

1967년 11월 6~8일에 開催된 會合에서 특허전문위원회는 제출된 版에 同意했다. 특허의 국제분류에 관한 유럽條約 第2條第2項의 규정에 따라서 사무국장인 通告한 후 6個月이 經過한 1968년 9월 1일에 IPC第1版이 發効됐다.

### 3. 細分化作業順調

유럽評議會締結國 代表團의 首席은 Bureau를 構成하고 同時에 기계담당부문 I로서 活動하고 있었다. Bureau는 분류체계의 配置, 작업의 調整 및 管理, 다른 담당부문에서 제출된 문제의 處理 및 豫算問題의 결정에 대하여 責任을 졌다. 그밖의 담당부문은 Bureau에 의하여 割當된 分野의 작업을 하는 책임을 졌다. 세분화 작업은 下記와 같은 方法으로 進行되었다.

- (A) 한 特許局에서 可能한 細分化作業(大體의 경우는 審査官의 協力을 얻어서 行했다)
- (B) 작성된 세분화의 提案에 대한 특허국의 서면에 의한 코멘트
- (C) 提案特許廳의 最終提案
- (D) 회합에서 代案을 생각하면서 行해지는 최

### 중제안의 검토

서브클래스의 세분화작업은 그 담당하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經驗이 豊富한 심사관의 助力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또한 適當하다고 생각되었다.

이것을 고려하여 서브클래스의 세분화작업은 西獨, 폴란드 및 英國의 특허청에 의하여 담당되었다. 한편 프랑스특허청은 프랑스語版의 작성에 대한 책임을 졌다. 최초 제안의 대부분은 西獨特許廳에서 했다. 그 當時 西獨은 IPC를 第1의 분류체제로 하여 사용할 것을 意圖하고 있었던 唯一하고 有力한 審査主義를 取하는 특허청이며 또한 西獨의 분류체계가 新分類體系의 基礎로서 쓰여지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當然한 趨勢였다.

작업부회의 要請에 의하여 사무국은 各擔當部門에 關係되는 構成國이 최초로 靑色(英語) 및 白色(프랑스語) 用紙의 單純한 寫本의 形態로, 다음에는 印刷物의 형태로, 展開內容을 入手할 수 있도록 處理했다. 上記印刷物은 豫備印刷版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으로 9卷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 豫備印刷版은 특허전문가위원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분류체계가 되도록 빠른 時期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기와 같은 便宜措置가 취해졌다. 이와같은 事情에 의하여 서브클래스의 세분화작업에 이르러서는 莫大한 量의 人力, 交通費 및 印刷費가 消費되었다.

IPC의 原則 및 사용에 관한 指針에 대한 최초의 초안은 드브레이(de-Bray 英國特許廳)에 의하여 작성되고 Bureau에서 검토되었다. 이 지침은 IPC를 사용하는 경우에 注意해야 할 많은 문제를 다루어야 했다.

그러나 문제가 다루어지는 데는 자연히 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지침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詳細하게 說明되었지만 몇가지 문제는 未解決된 채로 있었다.

작업부회에 의하여 제출된 최종판은 A~H Section, 115 Class, 607 Subclass 및 47,263 Group (6,175 Main Group을 包含하여)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것이 앞에서 말한 IPC 제 1판

## 國際特許分類(IPC)活用가이드 (2)

이고 그 英語版 및 프랑스語版이 물간·그란피안·복스社에서 발행되었다. 또 IPC제 1 판의 分類記號 앞에 「Int, cl」表示를 하기로 하였다.

### 5 IPC의 改正作業등의 一般化決定

IPC는 모든 파리 協約加盟國에게 開放되었지만 특허의 국제분류에 관한 유럽條約下에서는 유럽評議會締結國以外的 나라에 대하여 IPC에 관한 投票權이 주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IPC의 改正작업등에 不便이 있었다.

그래서 유럽평의회 1967년 11월회의에서 특허전문가위원회가

(1) 國際化計劃에 따라 IPC를 容易하게 採用하기 위하여 IPC에 보다 더 國際的인性格을 附與할 필요가 있다는 것.

(2) 특허의 국제분류에 관한 유럽조약의 모든 체결국은 平等한 權利를 가져야 할 것.

(3) 유럽評議會事務局長(Secretary General)은 이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研究하기 위하여 BIRPI {BIRPI는 나중에 設立된 世界知的的所有權機關(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以下 WIPO라 함)의 前身이지만 簡略하게 이하 BIRPI 밖에 存在하지 않았던 시기에 대하여 말할 때에도 WIPO라고 함}과 協力할 것등

세가지를 宣言했다. 그리고 1967년 12월의 파리同盟總會에서도 같은 要望이 提起되었다. 상기한 趣旨에 따라 특허의 국제분류에 관한 유럽조약의 改정은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되는 外交官會議에서 해야될 것이라는 結論을 얻었다. 또한 유럽評議會締結國 5個國과 WIPO의 5개國으로 된 歐洲評議會와 WIPO와의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合同暫定委員會(The Joint ad hoc Committee of the Council of Europe and WIPO on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를 設立하여 IPC의 改正準備作業을 受託했다.

### 6 合同暫定委員會의 構成

스트라스부르協定體制로 移行되기까지 暫定的으로 IPC에 관한 改定등 각종 작업, 결정을 행하는 機關으로서 設立된 合同暫定委員會의 下部機關으로서 Bureau 및 I~V의 작업부회가 있었다(第 1-2圖 参照).

합동잠정위원회의 첫 회합은 1969년 4월 14일 일에 베른에서 개최되었다.

특허의 국제분류에 관한 유럽조약의 最高機關은 유럽평의회체결국으로된 特許專門家委員會였다. 특허전문가위원회는 분류의 細部展開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기서 改正提議를 최종적으로 採擇했다.

第 1-2圖

